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1. 19.]

-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 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신청접수는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제주시 첨단로동길 10, 103동에 위치)에서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받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6. 01. 1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이하인자(출생일 1986.01.20. ~ 2007.01.1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자
 - 2)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주민등록상 1961.01.19.이전 출생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신청가능주택 및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신청 접수는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받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7.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 기간)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 되지 않습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JDC제주첨단 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10(월평동)	6개동 402호	철근콘크리트(벽식) / 개별난방(LPG)	'20. 08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공급 형태	공급대상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65)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16	대학생	88	16.7314	8.2317	2.6646	14.9912	42.6189	12	50
	청년								
43	고령자	15	43.9620	21.6290	7.0015	39.3897	111.9822	-	15

□ 임대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최대거주기간 (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16	대학생	13,100,000	2,620,000	10,480,000	52,350	-	13,100,000	52,350	10
	청년 (소득유)	13,100,000	2,620,000	10,480,000	52,350	(-)11,000,000	2,100,000	75,260	
						-	13,100,000	52,350	
16	청년 (소득유)	13,870,000	2,774,000	11,096,000	54,440	-	13,870,000	54,440	10
						(-)11,000,000	2,870,000	77,350	
	고령자	39,746,000	7,949,000	31,797,000	158,090	(+)16,000,000	55,746,000	78,090	20
					(-)34,000,000	5,746,000	228,920		

※ 임대공급 관련 유의사항

- 공급신청은 공급형태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는 경우 동일단지 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6형의 "대학생", "청년" 계층 물량을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냉장고·가스쿠포(2구)·불박이장·책상·책장 설치됩니다. (그 외는 미설치)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청년은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과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고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대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1.19.(월)**이며, 이는 **신청자격(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계층 재택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㉗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㉘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㉗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4,000,000원	-
	2인	0인	110%	104,000,000원	-
		1인	120%	114,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4,000,000원	-
		1인	110%	114,000,000원	-
		2인 이상	120%	125,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준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합니다.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분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합니다. → **본인 초본 제출하여 확인**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의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16형의 "대학생", "청년" 계층의 물량은 통합하여 추첨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㉗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㉘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㉗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6. 01. 20.~ 2007. 01 19.)

①-㉘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만)	1인	4,317,797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54,000,000원	45,6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45,6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50,20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54,76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54,000,000원	45,630,000원
	2인	0인	110%	254,000,000원	45,630,000원
		1인	120%	279,000,000원	50,200,000원
	3인 이상	0인	100%	254,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279,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305,0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대학생계층)이 적용**됩니다.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①-④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④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3-3.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120%
2인	6,024,703원 이하	110%
3인	7,626,973원 이하	100%
4인	8,578,088원 이하	100%
5인	9,031,048원 이하	100%
6인	9,733,086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기준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37,000,000원	45,630,000원
	2인	0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50,20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317,797원 이하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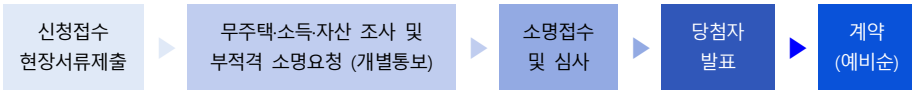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 공급일정

신청접수 및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발표
'26. 02. 03.(화) 10:00 ~ 02. 04.(수) 16:00 - 현장 및 등기우편 접수 -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제주시 첨단로동길 10,103동에 위치)	'26. 05. 08.(금) 16:00 이후 - 확인 방법 - JDC 홈페이지 (www.jdcenter.com)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or.kr)
	문의전화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 064-756-7889
	JDC 첨단운영팀 : 064-797-5749

- 신청접수는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제주시 첨단로동길 10, 103동에 위치)에서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예비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내 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01. 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0), 123456-1*****(x))
 ※ 제출된 서류는 탈락 시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6개월 보관 후 폐기처리)

□ 현장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우편접수 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동봉)

구 분	안내 사항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우편접수시 신분증사본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2026. 01. 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신청서	· 해당 공급대상 신청서	1통 (JDC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대상자)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서명 또는 날인	1통 (JDC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JDC양식)
무주택 서약서	· 대상자 : 모든 대상 계층에서 신청자 본인이 세대구성원을 대표하여 작성	1통 (JDC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JDC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신청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JDC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전부표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주의)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2026. 01. 19.) 이후 발급분이어야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계층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JDC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청년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 초년생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 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세청 해당 직장 (세무서) 해당 학교

6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p>■ 확인방법</p> <p>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p>
--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소유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 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와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함)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함)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되며,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중요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 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10년</td> </tr> <tr> <td>고령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 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 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고령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고령자	20년						
예비 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기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통보 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대상의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배우자의 세대 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유의사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2.04.)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주민공동시설 중 사회적기업 등은 입주민 외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키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 과정에서 오류, 오기, 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단열조치 준수	적 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 용
방습층 설치	적 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 용
열원 및 반송설비	적 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 용
고효율 전동기	적 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 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 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 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 용
조명설비 설치	적 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 용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적 용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회사			감리회사		
A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20-82-10410)	토목·건축·기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314-81-07954)	신진종합토건 주식회사 (616-81-14972)	㈜삼우씨엠엔건축사 사무소 (215-81-25903) ㈜목양종합건축사 사무소 (408-81-42391)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29-81-19550)		
		전기	보타리에너지주식회사 (125-81-42837)	미래이앤시주식회사 (210-81-56599)			
		통신	세안이앤씨 주식회사 (120-81-17027)	대영이앤씨(주) (616-81-30443)			
		소방	승림이앤씨(주) (110-81-75433)	환경이앤씨(주) (203-81-43325)		주식회사 서린전기소방 (616-86-10267)	㈜윤엔지니어링 (616-81-70862)
		조경	자연제주(616-11-68612)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운영팀 : 064-797-5749 (평일 : 09:00~18:00) ·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 064-756-7889 (평일 : 09:00~18:00) <p>※ 점심시간은 12:00~13:00로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p>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장소에서의 임대공급관련 업무는 공고문에 정해진 일시에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임대공급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현장 및 우편접수 : 2026. 02. 03.(화) ~ 2026. 02. 04.(수) 10:00~16:00 - 현장 및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10,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관리소(103동 지하에 위치) · 교통편 : 425, 426, 360, 365, 471, 490 버스 이용

2026. 01.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